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사촌의 이름을 그의 별명인 것으로 추측 보도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Ryan v. Herald Association Inc.

566 A2d 1316(버몬트주 대법원, 1989)

사건개요

위험한 폐기물 등 쓰레기를 가져다 불법하게 버린 사람은 Jack Ryan(이하, Jack 이라고만 한다)이었는데 Jack Ryan 이 그랬다는 말과 Dan Ryan(이하, Dan 이라고만 한다)이 그랬다는 말을 전해들은 신문기자가 Jack 이 Dan 의 별명인 것으로 임의로 추측하여 Dan 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기사를 썼고 그러한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었다. 이에 Dan 은 신문사를 상대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심법원에서는 배심에 의해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1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 달러를 각 지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피고는 Vermont 주 대법원에 상소하였다(역자주; Vermont 주는 2 심법원이 별도로 없음). 대법원은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소를 기각하였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발생 요건인 헌법상 악의와 보통법상 악의의 존재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요지

1. 중립보도의 면책특권은 뉴스적 가치가 있는 정확한 보도인 경우에 있어서만 면책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는 한 사람은 Dan 이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은 Jack 이 쓰레기를 버렸다고 알려 주었는데도 두 사람 모두 Dan 이 쓰레기를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적고 있어 기사내용이 불정확하므로 동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통법상 인정되는 공정보도의 면책특권은 이러한 면책사유들이 연방헌법상의 원칙에 따른 면책사유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Vermont 주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방어방법으로 그러한 특권이 주장될 수 없다.
3. 법원이 배심원들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의 요건, 액수결정의 방법과 고려사항 등에 관하여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였고 당사자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심원들이 사실적 피해로 1 달러를 인정하였을 때도 당사자들이 이에 따랐다면 이것으로 피해발생이 긍정되는 것이지 1 달러의 극소한 배상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발생을 인정할 충분한 입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름에 관하여 착오를 범한 것은 과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헌법상 악의와 보통법상 악의를 인정할 수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정이유

판사 Morse 는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의견을 표명한다.

원고 Dan 은 위험한 폐기물 등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 트럭 운전수가 실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촌 Jack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한 Rutland Herald(of 하, Herald 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심은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우리법상 소위 적극적 손해등에 대한 배상)으로 1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우리법상 소위 위자료 등의 배상)으로 5,000 달러를 각 인정하는 원고승소의 평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건 상소를 제기하였다. 당원은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파기하고자 한다.

1986 년 여름 Herald 는 Boston 의 건설지구로부터 Vermont 주로 트럭에 의하여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에 관한 시리즈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 중 한 사람인 Tom Mitchell(이하, Mitchell 이라고만 한다)은 『쓰레기 반입 중단되어야』 라는 제하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사는 1986 년 8 월 21 일자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 기사는 Vermont 주 Haven 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땅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반대하던 Peter Thorne(이하, Thorne 이라고만 한다)과 관계가 있다. 그와 같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중대한 주법위반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던 West Haven 지역행정담당관 William Kuehn(이하, Kuehn 이라고만 한다)의 견해를 포함한 여러 공무원들의 그에 관한 의견을 우롱한 후 그 기사는 「Kuehn 과 Thorne 이 Benson 회사의 트럭 운전사인 Dan 이 그와 같이 쓰레기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 적고 있다. Mitchell 은 이름이 잘못되었음을 통지 받고 이를 뒤에 바로잡음 기사를 신문에 게재케 하였다 원고는 여러 사람들로 부터 수시로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심한 비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 당황하였으며 모욕까지 당하였다. 이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Mitchell 의 잘못에 기인한다. 그는 Kuehn 으로부터는 문제의 운전사가 Dan 이라고 들었으나 Thorne 으로부터 는 Jack 이라고 들었었는데 Jack 은 트럭운송업자로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는 Dan 의 별명이 아닌가 추측하였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았었고 변론에서 그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였다.

I

당원은 Lent v. Hunton 판례에 나타난 Vermont 주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재언급을 하고자 한다. 명예훼손의 책임발생의 요건을 요약하면, (1) 허위인 명예훼손적 내용의 존재, (2) 기사게재에 있어 과실 또는 그보다 중한 잘못의 존재, (3) 적어도 1 인 이상의 제삼자에 대한 공표, (4) 공표에 있어서의 면책특권의 부존재, (5) 일반적 제소불능의 경우는 특별손해의 발생, (6) 보상적 손해배상을 보장할만한 구체적 손해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요건들 가운데 몇 가지는 이제 좀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

Lent 사건의 판시는 명예훼손사건에 관한 보통법상의 원리를 상당히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Vermont 주에 있어서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고 미국연방대법원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규율에 헌법적 검토를 처음 포함시킨 이래 모든 주에 있어서 발생한 비슷한 변화이다. 보통법은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우호적 원칙들을 발전시켜 왔었다. 이를테면, 명예훼손적 기사의 허위추정,

허위가 악의, 과실 등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불고려, 즉 허위자족성, 평판에 대한 침해추정 등은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H. Kalvan, Jr., A Worthy Tradition; Freedom of Speech in America 60-61). 이러한 보통법상의 제원칙은 결국 언론의 위축을 가져왔다. New York Times 사건 이래 대법원은 보통법상의 면책특권이 수정헌법 제 1 조의 법적 가치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전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매우 광범위하게 이러한 면책특권들을 대체시켜 나가는 것이 언론에 의한 불법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적법한 법익과 활기 있고 금지없는 언론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의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는 헌법학의 지난 25 년간의 과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비록 허위를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가치선언은 없으나, 수정헌법 제 1 조는 언론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허위까지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까지 말하여 지고 있다.

A. 책임발생 요건으로서 과오

보통법에서는 명예훼손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엄격책임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offence)가 되었다. 이제 적어도 피고가 언론매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어느 정도의 허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Gertz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래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른 경합적 별도기준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는 타인의 평판을 보상하여 주어야 할 주의 이익을 상호 교량한 후 잘못 없이는 법적 책임을 묻지않는 법칙이 존재하는 한, 각 주들은 신문사나 방송사 등이 거짓내용을 전파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다. Lent 사건에 있어서 두번째 요건인 약간의 과실(some negligence)이라는 관념은 이러한 헌법적 기준을 만족시킨다. 침해를 받은 개인이 공인인 경우에는 발행인측의 과실이상의 것, 즉 보다 큰 잘못이 입증되어야 한다. 수정헌법 제 1 조 아래에서는 주장된 명예훼손이 공무원 등과 관계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악의가 입증되어야만 한다. 만약 피고가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진실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 진실에 대한 부주의한 소홀함을 나타내는 기사를 실은 경우에는 헌법적으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헌법적 의미에 있어서 악의(현보적 또는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된다. 이 소송에 있어서도 공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헌법상 악의 또는 실질적 악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상 악의가 증명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Vermont 주법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법상의 악의와 헌법상의 악의가 입증될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되어 있다. 요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악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B. 책임발생요건으로서 실질적 피해

Vermont 주의 보통법에 따르면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자체로 제소가 가능하다. 이것은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공표만으로 명예에 대한 침해가 추정된다는 것과 특별한 손해, 즉

명예훼손의 결과로 야기된 금전상의 손실 같은 것은 특별히 원고에 의하여 변론되고 입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의 존재는 어떤 종류의 실질적 피해를 나타내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의 공표 그 자체만으로 결론적으로 전제되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상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언론매체에 대한 소송과 명예훼손적 내용이 공공적 관련을 갖는 때에는 Gertz 사건 이래 더 이상 평판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추정되지 않는다. Gertz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상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또는 일반적 손해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요청되고 있다. (중략) 요약하자면 사인인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적 허위내용을 공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고의 잘못이 헌법상 악의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입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손해가 추정되고 보통법상의 악의를 들어냄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받게 되는 것이고 헌법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가 명예훼손적 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실질적 손해의 배상은 증명을 전제로 구할 수 있는 일이나 징벌적 손해의 배상은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II

상소를 함에 있어서 피고의 첫째 주장은 기사가 법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는 기사에 있어 잘못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평판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다룬다. 따라서 피고는 지시판결(directed verdict)과 법원의 독자적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결 또는 새로운 심리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법원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기사내용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 본건 기사는 독자들에게 Dan 이 비합법적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계속적으로 주법을 어겨왔다는 분명한 인상을 주었다. 평판에 대한 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 원고는 그 요건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는 두 가지의 면책사유를 주장하는데 모두 그 이유 없다. 첫째로, 중립보도의 절대적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 면책사유라고 하더라도 뉴스적 가치가 있는 정확한 보도인 경우에 있어서만 면책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는 Thorne 은 Dan 이 쓰레기를 버렸다고 말한 일이 없는데 Kuehn 과 Thorne 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적고 있어 기사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이다.

(3) 둘째로 원고는 공정보도의 면책특권을 주장한다. 이 특권은 악의 없이 공공적인 이익 또는 관심에 관하여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는 특권으로 Michlin v. Roberts 사건에서 등장한 것인데 위 사건의 판시는 위 특권을 단지 New York Times 사건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적 법리의 소개와 그 아류로서 이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비슷한 헌법적 사건들, 특히 Rosenbloom v. Metromedia 사건의 판례 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들은 변경되었고 한때 Vermont 주에 있어서도 공정보도의

특권이 인정된 일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이에 관한 헌법적 규제가 변모되어 왔으며 본건의 경우 그러한 사유로 인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의 네번째 주장은 원고가 명예훼손의 요건이 되는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피고는 변론에서 나타난 증거로서는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심이 단지 1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원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법원은 배심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무엇이 실질적 피해인가 하는 점, 적정한 배상액의 의미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으로 소송지휘를 하였다. 양당사자 누구도 법원의 실질적 손해에 관한 위와 같은 소송지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배심원들이 피해가 극히 경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 피해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이에 따랐음이 명백하다. 법률에 의하면 실질적 피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전적 손실에 의한 특별손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판에 대한 훼손과 개인적 모욕으로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끝으로, 피고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관하여 다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가 헌법상 악의와 보통법상악의를 모두 입증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악의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증거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Mitchell은 Jack이 단지 Ryan의 별명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 맞는지 좀 더 주의깊게 확인했어야 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악의의 존재가 긍정되지 않으며 기록에 의하여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실질적인 일반적 악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진실에 대한 부주의한 소홀함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권리에 대한 임의적인 무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전화번호부 책에서 Ryan의 이름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듯이 Mitchell이 그의 취재원의 진실성에 대하여 다소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책임과 관련된 의심을 해소하였음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보상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기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이를 파기한다.